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공갈)(인정된죄명상습공갈)·주민등록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강요·점유이탈물횡령·위증교사·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



[부산지방법원 2015. 7. 16. 2014노3398,2015노121(병합),2015노1144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항 소 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문지선, 장성훈, 유시동, 나의엽, 천헌주(기소), 박신영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하늘 담당 변호사 이기웅

【원심판결】1. 부산지방법원 2014. 9. 19. 선고 2014고단154, 2014고단45(병합) 판결 / 2. 부산지방법원 2014. 12. 17. 선고 2014고단7421 판결 / 3. 부산지방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고단9857, 2015고단31(병합) 판결

【주문】

1

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.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압수된 망치 1개를 몰수한다.

[이유]

-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- 가.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.
- 나. 원심의 각 형(제1 원심판결 : 징역 3년, 제2 원심판결 : 징역 8월, 제3 원심판결 : 징역 4월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2. 판단

가. 직권판단

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.

-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,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,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 - 나.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

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, 즉 ① 이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공소외 1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에 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점,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은 제1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감금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, ③ 이후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자 제2 원심 법정에서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자백하였고,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, ④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내지 감금당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허위로 증언하게되었다고 진술한 점, 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면 피해자인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, ⑥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취지의 탄원서 견본을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보냈고, 공소외 4는 위 견본대로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에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여 탄원서 내용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- 가.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.
- 나. 원심의 각 형(제1 원심판결 : 징역 3년, 제2 원심판결 : 징역 8월, 제3 원심판결 : 징역 4월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2. 판단

가. 직권판단

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.

-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,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,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유지될 수 없다.
 - 나.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

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.

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, 즉 ① 이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공소외 1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에 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점,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,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공소외 2, 공소외 3은 제1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감금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, ③ 이후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자 제2 원심 법정에서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자백하였고,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, ④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감금당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허위로 증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, 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면 피해자인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, ⑥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견본을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보냈고, 공소외 4는 위 견본대로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에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여 탄원서 내용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.

【이유】

-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- 가.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.
- 나. 원심의 각 형(제1 원심판결 : 징역 3년, 제2 원심판결 : 징역 8월, 제3 원심판결 : 징역 4월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2. 판단

가. 직권판단

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.

-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,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,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 - 나.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
 -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.
-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, 즉 ① 이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공소외 1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에 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점,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은 제1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감금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, ③ 이후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자 제2 원심 법정에서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자백하였고, 위 범죄사실로 인하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, ④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감금당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허위로 증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, 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면 피해자인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, ⑥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견본을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보냈고, 공소외 4는 위 견본대로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에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여 탄원서 내용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.

【이유】

-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- 가.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.
- 나. 원심의 각 형(제1 원심판결 : 징역 3년, 제2 원심판결 : 징역 8월, 제3 원심판결 : 징역 4월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2. 판단

가. 직권판단

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.

-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,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,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 - 나.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
 -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.
-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, 즉 ① 이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공소외 1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에 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점,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은 제1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감금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, ③ 이후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자 제2 원심 법정에서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자백하였고,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, ④ 제2 원심 증인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내지 감금당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허위로 증언하게되었다고 진술한 점, 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면 피해자인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게 유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, ⑥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견본을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보냈고, 공소외 4는 위 견본대로 공소외 1, 공소외 2, 공소외 3에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여 탄원서 내용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